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55 호】

2015년 02월 17일 (화)

선람	기관의 장

회람							

차 례

입 법 예 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13호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1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5-261호 —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7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1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 월 1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시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4. 12. 31.일자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일몰기한을 2017. 12. 31.로 연장하고,

○ 해제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정비함(안 제3조)

나.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부터 14조)

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0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에 따른 재산세는 면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구·시·군”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96조”를 “법 제180조”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4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에 따른 재산세는 면제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생 략)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생 략)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1.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2. (현행과 같음)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배제)** 법 제180조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제13조(감면신청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 .

고양시 공고 제2015 - 161 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조 공인 등록 및 폐기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17

고 양 시 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기타 당해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2. 최초사용일 및 폐기일 : 2015. 2. 17.
3. 등록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명	규격(cm)	인 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고양시수입징수관인	2.0×2.0	

4.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인명	규격(cm)	인 영
지역발전특별회계 고양시수입징수관인	2.0×2.0	